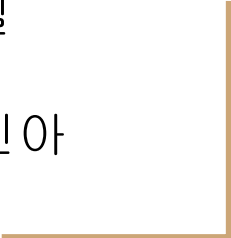


기본소득과 가족구성권

2019년 11월 20일
기본소득포럼
BIYN 보스턴피플 신아



생활동반자법과 보스턴피플팀

생활동반자법:

- 혈연 혼인 관계가 아닌 이들이 모인 가구를 사회를 구성하는 법적 단위로 인정하는 제도.
- 생활동반자 관계는 의료, 사회보험, 주거, 세금 등에 있어 가족으로서 보호받고 혜택을 누리게 됨. 독일,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법을 시행 중.
- 생계동반자관계란 공동생활의 실질이 있다는 점에서 혼인과 유사하지만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친족과 친족의 결합인 혼인과 구별됨(2014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‘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’, 15p)
- 공동생활을 둘러싼 법적 권리, 의무는 혼인과 유사하지만 상대방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생기지 않고 상속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(2014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 ‘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’, 15p)

BIYN 보스턴피플팀

-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개인들의 네트워크 BIYN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해 모여 활동하는 팀 (2018~)
- “결혼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잘 살고 있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살 수는 없을까?” 라는 질문에서 시작함.

보스톤피플의 활동

2018년 팟캐스트 <우리에겐 조금 먼 가족이
필요해>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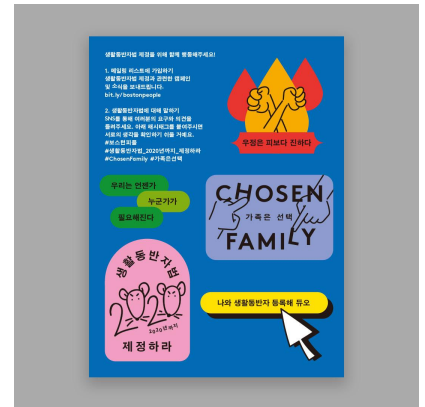
링크:
<http://www.podbbang.com/ch/1769183?e=22895341>

2019년 연속 강좌 <독립생활개론>

네트워킹 파티 <생활동반자를 찾는 밤>

세미나 <생활동반자법 알고 만들고
행동하기>

캠페인 - 스티커, 엽서 제작 및 배포



정상가족에 균열내기

- 1인 가구의 증가(2018년 29.2%), 혼인 감소(혼인건수 2018년 25만, 2015년 30만에서 점진적 감소), 현실의 변화와 달리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제도로 포섭하려고 함.
- 2019년 11월 13일 동성혼 파트너쉽 권리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1,056명 진정.
- 결혼에 부여되는 권리와 혜택,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. 한국 법체계에서 '배우자'라는 단어는 1,157번 등장(2014 생활동반자 사례자 포커스 인터뷰를 통한 정책욕구조사 20p)
- 여성들의 <82년생 김지영>에 대한 폭발적인 공감.
- 가족을 구성하는 단계에서, 가족 안에서 살아가면서, 가족을 해체하고 난 뒤의 모든 상황에서 불평등과 부정의 발생.

힘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협상력

-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: 불안, 두려움, 안정감, 당연함, 성공한 삶, 모두 그러하니까 등
- 생활동반자법은 '정상적 삶'으로 밀어넣는 힘들에 저항할, 버텨낼 수 있도록 할 것임. 결혼하여 정상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다른 삶의 모델이 가능하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가능할 것.
- 생활동반자법은 이에 대한 만능 제도는 아니지만, 독점적 정상 가족과 다른 가족형태를 지지하고 만들어 낼 수 있음. 이 때의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히 이성애 혼인의 이전 단계도 아니며, 동성간 혼인은 금지한 채 동성 커플에게 제한적 권리만을 부여하는 차별적인 제도도 아니어야 함.
-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성, 성소수자에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임.

하나의 법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!

- 기본소득이 개인들의 삶을 평등하게, 존엄하게 만들려면 여러 사회 변화가 뒤따라야 함.
-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어 정상가족 규범이 해체되고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하고, 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, 가족 중심의 복지제도가 개편되어야 함.
- 기본소득이 있으면 불안에 떠밀려 결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개인들이 원하는 삶을 생활동반자법은 뒷받침하고 보장할 것임.